

선수등록 변경내용

현	행	변 경 내 용	비 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이상 중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7 장 실업선수의 계약</p> <p>제16조 실업선수의 계약은 5년으로 하며 5년 내의 무단 이적을 금지한다.</p> <p>① 계약기간이 끝난 선수는 자유계약선수로 변환된다. 단, 계약기간내 타 단체로의 이적은 전 소속의 단체장의 직인과 감독의 서명이 있는 이적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최초 5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후의 계약은 3년으로 한다.</p> <p>③ 계약금에 대한 등급 규정은 한국실업육상경기연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</p> <p>④ 상기 계약에 대한 규정을 어길 경우 한국실업육상경기연맹 회원자격을 박탈한다. (해당 단체 및 선수, 감독, 코치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8 장 기타</p> <p>제16조, 제17조 생략</p> <p>제18조 본 규정은 2010년도 1월 27일 대의원총회 승인일부터 적용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이상 중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7 장 실업선수의 계약</p> <p>제16조 실업선수의 계약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5년, 대학교(전문대 포함)를 졸업한 자는 4년으로 하며 기간 내의 무단 이적을 금지한다.</p> <p>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자는 타 단체로의 이적이 가능하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. 단, 계약기간 내 타 단체로 이적할 경우 계약금을 받을 수 없으며 전 소속 단체장의 직인과 감독의 서명이 있는 이적동의서를 첨부하여 이적하여야 한다. 또한 팀은 잔여계약금을 선수에게 청구 할 수 없다.</p> <p>② 삭제</p> <p>③ 계약금에 대한 규정은 한국실업육상경기연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 단, 해당선수의 계약금에 따른 기록은 대한육상경기연맹에서 주최하는 대회의 기록으로 하며, 계약금의 재조정은 2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④ 상기 계약에 대한 규정을 어길 경우 한국실업육상경기연맹 상별규정에 따른다.(해당 단체 및 선수, 감독, 코치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8 장 기타</p> <p>제16조, 제17조 생략</p> <p>제18조 본 규정은 2014년도 1월 16일 이사회 승인일 부터 적용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자구 수정 및 조항 삭제</p>	

제6장 외국인선수등록 자격 및 대회 참가

제14조 외국인 선수등록 자격

- ① 실업팀 소속으로 선수등록은 소속회사에서 일정액의 보수 (계약서 및 소득증명서)를 받는 사원으로 등록된 자.
- ② 대학팀은 소속대학의 학적에 등록된 자.
- ~~③ 본 연맹에 외국인 선수로 등록하려는 자는 소속국가연맹 및 본 연맹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.~~
- ③ 각소속의 외국인선수는 2명에 한해서 등록할 수 있다.
- ④ 국가대표 마라톤선수 합동훈련에 외국인선수로 등록된 선수는 본 연맹 요청 시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5조 외국인선수 대회참가

국내에서 개최되는 대회에 다음과 같이 참가할 수 있으나 ~~시도대항 대회는 참가할 수 없다.~~

시도대항 및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참가할 수 없다.

① 트랙 / 필드경기대회

~~등록된 소속으로 종합선수권대회 1회에 한하여 참가가 가능하며, 그 외는 번외로 참가할 수 있다.~~

가. 등록된 소속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육상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.

나. 각종육상경기대회 트랙경기 중 100m ~ 400m까지의 결승경기에는 3명에 한하여 진출할 수 있으며, 필드경기 또한 3명까지 진출할 수 있다.

② 마라톤경기대회

~~등록된 소속으로는 국내마라톤대회 1회와 국내개최 국제마라톤대회 1회에 한하여 참가 가능하며, 그 외는 번외로 참가할 수 있으며, 국내개최 국제마라톤대회는 소속 국가명으로 참가할 수 있다.~~

~~「단 외국인 선수의 국내대회 번외 참가시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여 당분간 소속 국가명으로 참가토록 한다.」~~

등록된 소속으로 전반기 1회, 하반기 1회에 한해서 참가할 수 있으며, 그 외는 소속 국가명으로 참가할 수 있다.

제16조 외국인선수 대회참가에 따른 시상

외국인선수로 등록된 자는 제15조에 해당되는 대회에 참가하여 입상을 하여도 국내소속으로 시상할 수 없다. 단,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국내소속으로 시상이 가능하다.